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75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자 (제출일)	심사경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137호)	정부	2024.6.28.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4.08.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6723호)	윤준병의원	2026.2.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2.20.)

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9.)

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에

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8조, 제67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채실적
2.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3.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
4.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5. 그 밖에 배분량 할당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및 포획·채취의 정지”로 한다.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
3.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어획실적

제67조제3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4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하거나 제외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량 실적과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전재실적 및 양륙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생 략)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현행과 같음) 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제 실적 2.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3.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 4.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5. 그 밖에 배분량 할당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③ (생 략)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u>정하는 사항</u>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 3.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어획실적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및 포획·채취의 정지----- -----. 제67조(벌칙) -----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u>제38조제4항을</u>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38조제4항제3호를</u>----- ----- ----- 4. (현행과 같음)
---	---